



Mercedes-Benz
Mobility

영업직원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 조건

메르세데스벤츠모빌리티코리아 주식회사(이하 “갑”) 와 본인 (이하 “을”)은, “갑”의 렌탈상품(장기 렌터카, 이하 “렌탈”)을 “갑” 또는 “갑”의 대리인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을”의 일정수준 이상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갑”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 기준과 절차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 1 조 (참여대상)

1. “을”은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로 한다.
 - 1 “갑”의 렌탈상품 판매를 위하여 “갑” 혹은 “갑”의 대리인에게 고객을 소개하는 용역을 “갑”에게 제공하는 자
 - 2 딜러십과의 고용계약 또는 위탁계약과는 별도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제1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
 - 3 본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자
 - 4 본 프로그램 참여 조건에 동의하는 자
2. 다음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을”은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 중에도 가능하다.
 - 1 “을”이 참여 조건 및 문서에 기술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
 - 2 “을”이 “갑”의 명예 및 신용을 손상시키는 등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3 “갑”과 “을”이 소속되어 있는 딜러십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 4 “을”과 “을”이 소속되어 있는 딜러십과의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 5 “을”이 제7조 제5항에 따라 “갑”에게 “갑”의 정보 활용에 부 동의하는 통지를 한 경우
3.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효력은 즉시 상실되며, “을”은 재 참여할 수 없다.

제 2 조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

“을”의 업무 수행 시간과 장소는 업무의 속성상 따로 정하지 아니하며, “갑”은 “을”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제 3 조 (업무수행 방법)

1. “을”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수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승낙 없이는 제3자로 하여금 “갑”이 위탁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단, “을”이 “갑”의 또 다른 업무 수탁자에게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을”은 “정직과 신뢰성(Integrity)”에 기초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을”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5. “을”의 업무는 고객에게 “갑”의 고객 장기렌탈 서비스를 알선하는 업무로 한정된다.

제 4 조 (참여방법)

1. “을”은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 조건을 확인 후,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함으로써 참여 신청을 한다.
2.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효력은 참여자에 대한 “갑”의 승인절차가 완료된 이후 발생한 것으로 한다.

제 5 조 (인센티브의 지급 및 사용)

1. “갑”은 “을”이 별첨1에 제시된 일정수준의 성과를 달성 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갑”은 “을”의 위 성과 달성과 관련하여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의한 인센티브 지급 외에 그 명칭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이익도 제공할 수 없다.
2. “을”은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참여자의 인센티브와 합산할 수 없다.
3.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재판매·양도할 수 없다.
4. “을”의 위법행위 및 “갑”의 내부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사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갑”은 “을”의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5. 제1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지급 받은 포인트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는 해당 선불카드가 정지되며 남은 포인트는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다.
6. “을”이 소개하여 체결된 렌탈계약 실행 후 183일 이내에 조기해지 및 60일 이상 연체 계약 건 발생 시 “을”에게 기 지급된 인센티브는 추후 발생하는 렌탈계약 건과 관련하여 지급될 인센티브에서 차감하고 지급된다.
7. 제6항에 따라 “을”에게 기존 미 차감된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상태로 “을”이 “갑”과 계약이 체결된 다른 딜러사에 입사/계약 또는 기존 딜러사에 재입사/재 계약하는 경우, 기존 미 차감된 인센티브는 “갑”이 추후 지급하여야 할 인센티브에서 차감 후 지급된다.
8. “을”이 지급받은 인센티브는 현금으로 환불할 수 없다.

제 6 조 (손해배상의 의무)

1. “을”은 인센티브 프로그램 또는 이와 관련된 기타 약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해 피면책인(이하 제2항에서 정의)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관련 비용(이하 제3항에서 정의)을 배상하고, 제3자의 청구로부터 “갑” 및 그 임직원, 이사, 대리인 등을 면책해야 한다.
2. ‘피면책인’이라 함은 “갑” 및 기타 다임러 그룹 회사 및 그 임직원, 이사 및 대리인 등을 포함한다.
3. 본조에 따라 “을”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손해 및 관련 비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 1 피면책인을 상대로 제기되거나 징구된 제3자의 금전적인 청구, 벌금, 과징금, 법원의 판결이나 행정처분 또는 합의금
 - 2 피면책인이 상기 제1호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급한 모든 합리적인 비용 (변호사 선임 및 자문 비용 포함)
 - 3 피면책인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 7 조 (기타)

1. “갑”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 동안, “을”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의 임직원 및 대리인의 고의, 그리고 중대한 과실에 국한된다.
2. “갑”은 개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을”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별첨1의 형식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3. “갑”은 “갑”의 경영 상황 등을 이유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 할 수 있다.
4. “을”은 참여자로서의 준수 의무를 지킬 것을 확인하며, 상기에 언급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
5. “을”은 인센티브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집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갑”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만일 “을”이 프로그램 진행 중 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에게 직접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는 불가능하다.

제 8 조 (반부패방지법준수의 의무)

1. 갑”과 “을”은 Daimler AG(이하 “다임러”)와 그 계열사들이 해외 활동 및 투자를 포함한 사업 행위를 영위함에 있어, 기타 관계 법령 (이하 별첨 2에서 정의)뿐만 아니라 미국 해외부패관행방지법 (이하 “부패방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바, 각 당사자는 본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관계 법령을 잘 알고 있음을 확인하고,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 관계 법령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

2. 상기 1항에 추가로 “을”은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 시행일 기준으로 별첨 2와 같이 진술 및 보장하며, 약속한다. 상기 진술 및 보장과 약속은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제 9 조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

“을”은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갑”으로부터 지득하거나 제공받은 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법령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0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해 해석되고 규율 된다.
2.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이를 승계하는 법원을 포함)으로 한다.

별첨1

메르세데스벤츠모빌리티코리아(주)에서는 렌탈상품에 대한 관심과 이용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MBMK Salesperson(영업직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아 래 >

- 1) **프로그램명:** MBMK Salesperson 인센티브 프로그램 (영업직원 대상)
- 2) **기간:** 2020년 10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 3) **내용:** MBMK 장기렌탈 서비스 계약 건에 대한 인센티브를 선불신용카드를 통한 포인트로 지급
(제세공과금 제외)
- 4) **적용모델:**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쉽에서 판매하는 벤츠 전 차종
- 5) **포인트 적립율:** 차량 공급가액 (옵션가 포함, VAT 제외) * 5% 또는 3% (제세공과금 차감 후 10원단위 절사한 포인트 적립)

적용 차종	더 브릿지("The Bridge") 캠페인 차종	GLA 250 2개월 월대여로 면제 캠페인 차종	더 브릿지("The Bridge") 캠페인 차종을 제외한 전 차종
차종 상세	E Class 전차종 및 S 560 e (E 300 AV 및 AMG 제외)	GLA 250 4M	상동
포인트 적립율	5%	5%	3%

* **프로모션 조기 종료 및 기타 정책에 따라 수수료 중도 변경 가능**

- 6) **지급조건:** 2020년 10월 1일 ~ 12월 31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약 기준/ 2021년 1월 6일까지 MBMK 차량인도 확인서 작성 완료 기준)
- 7) **기타사항:** 적립 포인트는 추후 선불카드를 통하여 사용 가능함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불 불가)
 - 적립 포인트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영업직원에게 있습니다.
 - 메르세데스벤츠모빌리티코리아(주)는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등 대한민국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 8) **적용대상:** 상기 프로그램은 딜러쉽의 동의를 전제로, 참여신청을 한 영업직원분에게 적용됩니다. 이에 아래의 내

용을 요청드립니다.

MBMK 참여신청서에 동의 선택

별첨2

별첨 2 부패방지법 관련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

제 1 조 “을”은 단독으로 그리고 관계인 (이하 5조에서 정의)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 및 보증하며 확약한다:

- 1항) “을”과 그 관계인은 각각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고, 알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준수하였고 장래에도 준수할 것이다. 또한 “을”과 그 관계인은 알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다임러나 그 계열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나 부작위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장래에도 이를 행하지 않을 것이다;
- 2항) “을”과 그 관계인은 각각 알고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아래의 목적을 부정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직, 간접적으로 어떠한 금전 또는 기타 가치가 있거나 이익이 되는 것을 정부 공직자에게 제안, 지급, 제공 또는 대여한 바가 없고 장래에도 제안, 지급,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을 것이다:

- 1호. 정부 공직자의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줄 목적,
- 2호. 정부 공직자가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적법한 의무를 위반하도록 영향을 행사할 목적,
- 3호. 부적절한 이익을 보장할 목적,
- 4호. “갑”, “을” 또는 그 계열사에게 사업을 배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행위나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정부 공직자를 유도할 목적

- 3항) “을” 또는 그 관계인이 현재 정부의 공직자 (이하 ⑤조에서 정의)이거나 장래 공직자가 되어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 이해상충을 배제하여야만 하며, 이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하여 지체없이 “갑” 또는 다임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호. “갑”, “을”, 또는 그 계열사에게 사업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
- 2호. “갑”, “을”, 또는 그 계열사에게 사업을 배정할 수 있는 지위의 정부 공직자를 감독하거나 관리 또는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제 2 조 “을”은 다임러 및 “갑”의 관계 법령 준수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을”은 정확한 장부를 보존해야 하고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요구되거나 제공되거나 제안된 뇌물 또는 기타 부적절한 지급에 대하여 “갑”또는 다임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갑” 또는 다임러의 요청 시, “을”은 “갑”또는 다임러가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을”이 관계법령을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장부를 감사인(“갑”또는 다임러에 의하여 선임되고 비밀유지의무를 서약한 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동 감사인이 감사 후 “을”이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발견하는 경우, “을”은 감사인이 그 위반에 대한 정보를 “갑”, 다임러와 제3자에게 관할 법원이나 정부가 적법하게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 3 조 만약 “갑”이 “갑”의 특정 행위 또는 부작위가 관계 법령의 위반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갑”은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을”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당 행위의 이행 또는 부작위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갑” 또는 다임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행위나 부작위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 조 만약 “을”이나 관계인이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 기간 동안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 제8조 또는 별첨 2에 따른 진술 및 보장 또는 확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권리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해당 진술 및 보장 또는 약속사항은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 기간 동안 그 효력을 지속하며, 그 위반은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 1항) “갑”은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경우, “을”에게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금원의 몰수를 선언하고 “을”에게 지급되거나 외상처리된 금원의 상환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 2항) “갑”은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 3항) “갑”의 최초 서면 요구 시, “을”는 즉시 “을”의 동 진술, 보장 및 약속 불이행을 사유로 다임러 또는 “갑”이 부담하게 된 비용 및 다임러 또는 “갑”을 상대로 제기된 모든 청구와 관련하여 “갑”을 이로부터 면책하여야 한다.

제 5 조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 제8조 및 별첨 2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는 아래에 기재된 의미를 갖는다:

- 1항) “관계 법령”이란 (가) 미국과 독일의 관할권 제한과 관계없이 미국 해외부패관행방지법과 독일 반부패법, (나)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목적인 물품과 정보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및 독일 수출제한 법, (다) 기타 법률, 규칙, 규정, 명령, 시행령 또는 본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을” 또는 그 관계인이 종사하는 업무에 적용되는 기타 강행규정 또는 지시사항 (수시로 개정된 것을 포함)를 의미한다.
- 2항) “관계인”이란 “을”의 임원, 이사, 피고용인, 또는 그 대리인, 또는 그 주주, 그를 위하여 또는 그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지배인 또는 소유인을 의미한다.
- 3항) “정부단체”란 정부, 부서, 대리인 또는 그 종개인(정부가 지배하는 회사나 단체를 포함), 정치단체나 공공 국제기관을 의미한다.
- 4항) “정부 공직자”란 공무원, 피고용인 기타 정부단체에 직위를 갖고 있는 자(그 직계가족을 포함), 정부단체를 위하여 공무원의 지위로 활동하는 자 또는 기타 정계 후보자를 의미한다.